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A004

*beyond*  
the best

금호석유화학

주관팀	전략기획팀	등록번호	A004
담당팀	IR팀	제정일자	2007. 04. 01
제정권자	주주총회	시행일자	2019. 01. 01
배포처	전 사업장		

개정차수	개정일자	주요개정조항	개정사유
제 1차	2014. 10. 16	담당팀 변경	조직개편
제 2차	2019. 01. 01	담당팀 변경	조직개편(전략기획팀→IR팀)
제 3차			
제 4차			
제 5차			
제 6차			
제 7차			
제 8차			
제 9차			
제10차			
제11차			
제12차			
제13차			
제14차			

☞ 목 차 ☞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목적

제 2조 적용범위

제 3조 권한

제 2 장 구 성

제 4조 구성

제 5조 위원장

## 제 3 장 회 의

제 6조 소집권자

제 7조 소집절차

제 8조 결의방법

제 9조 부의사항

제 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

제 11조 의사록

제 12조 간사

제 13조 규정의 개폐

## 부 칙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)

1.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2.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성)

1.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2.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**제 5 조 (위원장)**

1.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 3 장 회 의**

**제6조(소집권자)**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7조(소집절차)**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8조(결의방법)**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

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.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제11조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12조(간사)

1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